

넷째, 따라서 조약이라는 특성에 맞추어 포괄적이면서 각 국가의 인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여성의 권리가 집약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단독조항 전체가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유보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점진적 이행”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조(Article)내의 전체항이 유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제5차 ~제7차 특별위원회의 동안에 여러 협의의 단계를 거쳐서 현재의 의장안에는 장애여성의 권리가 이중구조방식(제6조와 관련조항)으로 들어가 있다.

아래에서는 처음 제기되었던 한국추진연대의 안과 한국정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현재의 의장안을 검토할 것이다. 의장안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나 장애여성의 시각에서는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IDC의 의견을 기반으로 작성된 한국추진연대 여성위원회의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한국안과 의장안 검토.

1. 한국추진연대 초안과 한국정부안의 단독조항 및 의장안 수렴 여부²⁾

한국추진연대는 3차 특별위원회의 첫날에 아래의 내용을 한국정부가, 특별위원회 의에서 제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추진연대의안을 기초로 한국정부는 당시에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특별위원회의의 여러 회차를 거쳐서 7차 회의 전에 재차 수정된 한국정부안을 게재한다.

한국추진연대 안	한국 정부 안 ³⁾	의장안 여부
	제4조 일반의무 1. 당사국들은 장애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없이 장애인의 인권 전반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 특히 <u>각 개인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성인지적관점을 주류에 포함시킴으로서(추가)</u> 이를 보장하도록 책임진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정부안은 의장안에 <u>굵은 서체</u> 를 추가.
1. 각 국가는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	1. 당사국들은 여성장애인의 인권전	공통 1과 2 및

2) 이글의 본 부분은 영어소통이 어려운 참가자들을 기준으로 한글로 조약의 내용을 게재한다.

한국추진연대 안	한국 정부 안 ³⁾	의장안 여부
게 장애를 이유로 또는 여성임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없는 동등한 권리 및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각 국가는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존엄을 보장받고, 완전한 참여를 통하여 자유롭고 안전하게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진 여성 인지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제도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 장애와 여성 관련 그리고 사회보장 법률 등에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별도의 조항을 두어야 한다. (b) 각종 통계와 기초조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항상 장애를 가진 여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인 관련통계는 성별로 구축하고,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여성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성에 관한 권리에는 물리적 안전과 성적 보호가 포함됨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d)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성역할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장애를 가진 여성의 선택에 따르는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	반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들은 여성장애인이 전생을 걸쳐 직면하는 성별(gender)과 장애에 근거한 다중차별과 특정 불이익을 규정함으로써(addressing) 여성장애인이 자유롭고 안전하며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장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a) 당사국들은 법적으로 여성장애인이 자유롭고 안전하며 자주적으로 살아가도록 보장하기 위해 여성과 장애인에 관한 법률에 여성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별기준을 포함한다. (b) 당사국들은 자료의 수집이 성해체적방식(gender disaggregated way)으로 이루어지며 여성장애인이 자료수집과 프로그램의 디자인과 이행에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c) 당사국들은 여성장애인을 가정, 기관 및 공동체에서의 성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d) 당사국들은 여성장애인(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그들의 능력과 요구에 상당하는 교육과 기술향상을 제공하기 위한	2(a) ; 서문(n)과 Art 6에 포괄적 수렴. 공통 2(b) ; Art 31 통계와 자료수집에 포괄적 수렴. 공통 2(c)와 추진연대안 2(d)의 (i) ; 서문(o)와 Art 16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에 포괄적 수렴.

한국추진연대 안	한국 정부 안 ³⁾	의장안 여부
(i)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가정과 시설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성적보호가 포함됨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ii) 일하는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 의사표시를 존중하고, 임신 출산에 의해 노동권을 제한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여야 한다. (e) 장애를 가진 여성들로 구성된 자조조직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f) 정부의 모든 부처 및 관련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는 장애를 가진 여성 인 지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각 국가는 보다 취약한 조건에 놓인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빈곤에 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e) 당사국은 노동시장에서 장애와 성에 근거한 여하의 차별도 금지하며, 특히 사업장에서 임신, 출산 및 산후기간동안 장애여성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 당사국들은 강제불임 금지를 포함하여, 여성장애인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의 보호하며, 가족계획, 부모역할(parenthood), 임신, 출산 및 산후 기간과 같은 분야에 있어 여성장애인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보급할 것을 보장한다.	추진연대안 2(d)의(ii) 및 정부안2(e) ; Art 27 근로 및 고용에서 고려없음. 추진연대안 2(e) ; 자조조직지원에 관하여 고려 없음. 추진연대안 2(f) ; Art 8 인식개선 1(b)에 포괄보호가 포함됨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안 2(f) ; Art23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에서 고려없음./Art25 권강에서 포괄적 수립-특성화되지 못함. 추진연대안 3. ; Art 28

한국추진연대 안	한국 정부 안 ³⁾	의장안 여부
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적정 삶의 기준과 사회적 보호2(b)(Add)로 고려 중.

2. 한국안의 주요 내용에 대비한 의장안 검토

한국추진연대의 초안과 한국정부 수정안의 요점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한국정부 안에서는 한국추진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특히 장애여성의 빈곤 문제와 인식증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교육권을 명시 자립적 근간을 마련할 것을 포함하였다.

의장안에는 한국의 안이 대체로 수정이나 기존의 규정안들에 gender용어를 추가하는 형태로 포괄적으로 수렴되었으나, 장애여성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일할 권리에 대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한국 정부안은 단독조항과 더불어 각 국가의 일반의무조항(Art 4)에도 협의 조정자(facilitator's)의 제안에 따라 각 조치에 있어서 성주류화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국가의 일반의무조항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III. 한국추진연대 여성위원회의 수정 제안

7차 회의 이후 의장안은 두 번에 걸쳐 수정 제안되었다. 8차 회의에서는 현재 의장안에 대한 많은 수정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추진연대 여성위원회는 현재의 의장안을 가능한 수용하면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부분과 단독조항 6조를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검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는 의장안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한국추진연대 여성위원회의 의견을 밑줄로 표시하여 추가하는 형태로 작성하였다.

1. 일반조항

Preamble	서문
(n) Concerned about the difficult conditions	(n) 인종, 피부색, 사회적 성별, 언어, 종교,

3) 영어 원문은 본 글 뒤에 별첨.